

#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정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KWRA)로 한다.

제 2 조(목적) 이 학회는 지구상의 물에 관한 학술발전을 도모하며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이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 ② 주사무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유급직원을 둔다.

제 4 조(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물”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 교육 및 지도
2. 회지, 논문집 및 관련 기술 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의 개최 및 국내외 견학시찰
4.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참석
5. 정부, 공공단체,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물”에 관한 기술연구 및 분석업무의 수행
6. 포상 및 장학사업
7. 기타 학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위원회설치) 이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의 결의로써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지회) 이 학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학회의 소재지 이외에 필요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부설연구소)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연구소 규정을 따른다.

## 제 2 장 회 원

제 8 조(회원)

- ①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고문, 참여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로서 정회원, 명예회원, 참여회원 중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1. “물”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
  2. 전호과목을 이수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일반정규대학 졸업자로서 “물”에 관련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기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물”에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③ 학생회원은 “물”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회원인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④ 명예회원은 “물”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공적을 남긴 국내외 인사 중에서 평의원회 결의로 추대한다.
- ⑤ 고문 및 참여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추대된다.
1. 고문은 회장을 역임하거나 또는 참여회원 중에서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인사로서 평의원회의 의결로 추대된다.
  2. 참여회원은 수자원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회장 또는 4년 이상 이사를 역임하고, 학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정회원으로서 평의원회 의결로 추대한다.
- ⑥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 9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0 조(회비)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로 한다.

- ① 입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 ②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의 연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종신회비로서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다.
  2.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외국출장, 외국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납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연회비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연회비의 납입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입회비 및 연회비 면제) 입회비 및 연회비의 면제 대상 및 조건은 운영규칙에 정한다.

제 12 조(회원의 제명) 회원 중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평의원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13 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 중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장기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4 조(회원의 복권) 자격 정지된 회원 중 복권을 희망하면 이사회 승인을 얻어 복권할 수 있다.

제 15 조(탈회) 이 학회의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이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회된다. 또한 본인 사망은 탈회로 본다.

### 제 3 장 임 원

#### 제 16 조(임원 및 임기)

- ① 이 학회에는 회장 1인과 9인 이내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55인 이내 및 감사 2인을 둔다.
- ②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될 수 없다. 단,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그 외의 임원 임기의 개시는 선임 일로부터 시작한다.

#### 제 17 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5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 후보가 1인의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장선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8 조(임원의 자격) 회장은 수자원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회장 또는 6년 이상 이사를 역임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인 자중에서 선출한다.

#### 제 19 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의외의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회무를 심의 한다.

#### 제 20 조(감사의 임무)

- ①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1 조(임원의 임기 중 퇴임) 임원은 임기 중 6개월 이상 회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임하여야 한다.

제 22 조(임원임기의 승계) 임원중 임기 도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1. 회 장 : 연장의 부회장
2. 이 사 : 회장단의 선출

### 제 4 장 회 의

#### 제 1 절 총칙

제 23 조(회의의 종류) 이 학회 회의에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원로회의가 있다.

제 24 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 ① 모든 회의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특히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여 설립된다. 모든 회의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의의 의사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의장과 등기이사가 날인한 다음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 2 절 총회

제 25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26 조(정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로 타처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회원 10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총회소집은 총회 10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게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임시총회의 소집)

- 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성립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평의원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3. 정회원 정수의 100분의 5이상 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게시하고 서명청원할 때
- ②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1항의 요구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제 28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인준
4. 정관의 개정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의 설정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29 조(의결방법)

- ① 총회의 출석회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학생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 ②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
- ③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총회소집일 현재의 회원으로 한다.
-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 연장부회장순으로 한다.

제 3 절 평의원회

제 30 조(평의원의 구성)

- ①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 30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평의원은 10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평의원의 1/2은 전체 회원이 직접선출하고 잔여 1/2은 회장이 임명한다. 직접 선출방법은 별도의 평의원 선거규정을 따른다.

제 31 조(평의원회의 결의사항) 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고문, 참여회원의 제청, 선출 및 인준
  4.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제정
  6. 회원의 제명
  7.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② 평의원회 결의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제 32 조(회의)

- ① 평의원회는 정례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 ② 정례평의원회는 회장이 년 2회 소집한다.
- ③ 임시평의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평의원 15인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서명 청원할 때
- ④ 평의원회는 평의원과 임원, 고문, 참여회원 및 각 지회의 대표로 구성되며,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⑤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 연장부회장순으로 한다.

제 4 절 이 사 회

제 33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년 4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 34 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재적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안)

2. 정관 및 규정 변경안의 작성 및 기타 운영세칙의 제정 및 변경
3. 회원의 자격심사
4.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총회 및 평의원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 제 5 절 원로회의

제 36 조(원로회의의 목적) 원로회의는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자문과 조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7 조(원로회의의 구성 및 운영) 원로회의의 구성 및 운영,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5 장 회 계

제 38 조(적용) 이 학회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 39 조(회계기준과 회계단위)

- 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 운영현황 및 자금의 수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계단위는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관한 일반회계와 그 이외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40 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찬조금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및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장려금,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 41 조(자산) 이 학회의 자산은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채권으로 한다.

제 42 조(기금운영 및 적립금)

- ① 회장은 이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이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결의로써 조성된 기금을 학회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보고) 매년도 결산은 총회의 보고를 거친 뒤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46 조(기록의 보존) 이 정관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 근거자료로서 제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보존년한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 47 조(정관시행) 본 정관 변경은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48 조(해산 및 재산귀속) 이 학회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9 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1. 설립 당초에 설립 허가를 받기위하여 우리들 설립자는 당초의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 날인한다.

1967. 11.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동 247번지	김 윤 기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04-602	최 치 환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선동 3가 213	김 성 희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2가 424	황 정 철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19	박 성 우 (인)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73. 6. 15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77. 2. 25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78. 3. 28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79. 3. 9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80. 2. 15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81. 2. 12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86. 11. 26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88. 3. 9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전면 개정정관은 1989. 3. 18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92. 3. 11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1995. 2. 28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2000. 4. 15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2004. 3. 20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2005. 6. 3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2011. 7. 4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2012. 4. 6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2014. 3. 25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2016. 5. 10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정관은 2016. 8. 22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